

의안번호	제호
의결연월일	2009. 11. . (제회)

의결사항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

발의자	안철우 의원 외 1
발의연월일	2009. 11. .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

의안 번호	2009 ~
----------	--------

발의연월일	2009. 11. .
발 의 자	안철우 의원 외 1

1. 제안이유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건설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제도개선과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지원
-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 증대에 노력
- 다른 지역 건설사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 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

다.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 설계 및 시공 방지

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에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안 제5조).

마. 거창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그 밖에

- 1) 입법예고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군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내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육성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 설계 및 시공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건설산업체를 제6조에 따른 거창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제6조(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거창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 및 하도급 참여 비율 실태파악에 관한 사항
3.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과 해소에 관한 사항
4.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과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5.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재무과장, 건설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1. 군의회 의원
2.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